



즉시 사용

| | | | |
|----|--|----------------|---|
| 비고 | 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공정위, 국토부 | | |
| 담당 | <총괄> 국조실 기획총괄정책관실 | | 과장 이동훈, 서기관 이경수 (044-200-2056, 2057) |
| | 시장진입·영업 규제 혁신방안 |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| 과장 류승목, 사무관 이규배 (044-200-2430, 2407) |
| | |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 | 과장 김호태, 서기관 이강수 (044-200-4121, 4354) |
| | | 국토부 항공산업과 | 과장 김도곤, 사무관 홍승희 (044-201-4219, 4231) |
| |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| 국조실 재정금융정책관실 | 과장 권주성, 서기관 문종숙 (044-200-2190, 2191) |
| | | 공정위 경제민주화추진팀 | 팀장 이준헌, 사무관 구태모 (044-200-4311, 4312) |
| | 굴착공사 안전대책 | 국조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| 과장 차상헌, 서기관 윤종빈 (044-200-2235, 2236) |
| | | 국토부 시설안전과 | 과장 고용석, 사무관 허원석 (044-201-3573, 3574) |

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.

<시장진입·영업 규제 혁신방안>

- ▶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는 일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(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한 '과당경쟁 우려' 기준 삭제)
- ▶ LPG 판매사업자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확대 (3톤→10톤)

<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>

- ▶ 불공정한 갑질행위 방지,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- ▶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적발·시정, 순환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 유도 및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재벌개혁도 병행 추진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서울↔세종 영상회의)를 주재했습니다.
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시장진입·영업 규제 혁신방안」, 「경제 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」 과 「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」 을 논의했습니다.

* (참석) 교육부·과기정통부·법무부·농식품부·복지부·고용부·중기부 장관, 국조실장, 행안부·문체부1·산업부·환경부·국토부1·해수부 차관, 공정위원장, 금융위 부위원장, 국세청·관세청·특허청·통계청·문화재청·소방청장 등

◆ 시장진입·영업 규제 혁신방안 (국조실)

- 정부는 시장성장·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,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, 영업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.

-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,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(40건)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①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,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.

- 우선, 항공·도매·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.

* (예시)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,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‘과당경쟁 우려’ 기준 삭제

- 또한,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·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합니다.

* (예시) 약취 기술진단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 (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)

-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·유형·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,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합니다.

* (예시) 연령별 맞춤형 제공을 위한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마련

② **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,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.**

○ 우선,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**생산·판매가 가능한 지역·대상을 확대**합니다.

* (예시) **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처리 대신 자체 멸균시설 설치·처리 허용**

○ 또한,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**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**을 개선합니다.

* (예시) **지자체에서 입찰 시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폐지**

○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**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·부담**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합니다.

* (예시) **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 허용 여부를 지자체가 통행구간, 안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**

□ 정부는 '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○ 기존 발표된 과제는 **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**할 예정입니다.

* 정부는 시장진입·영업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·개선해 왔으며,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일부 과제를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미 발표

○ 특히,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,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겠습니다.

※ (별첨) 시장진입·영업 규제 혁신과제(40건) 주요내용

◆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 (공정위)

□ 정부는 우리 경제·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민주화*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.

* △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△재벌개혁 △대·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△소비자보호 강화 △과세형평 제고 등

○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그간의 경제민주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.

□ 현재까지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○ 하도급·가맹·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*,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제재 강화**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.

* ①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등(하도급법, '18.1월)
②보복조치 금지 도입 및 확대(가맹법['18.1월], 유통법['18.10월)
③3배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(하도급법['18.1월], 가맹법['18.1월], 유통법['18.10월) 등

** ①손해배상 시효 확대(안 날로부터 1년 → 2년, 있던 날로부터 3년 → 5년)
②벌금(부당이익금 2~5배 → 3~5배) 등 형벌 수준 강화 (자본시장법, '18.3월)

○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·시정하고, 순환 출자 고리 자발적 해소* 유도 및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,

*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(자산 10조 이상) 순환출자 고리 수 : 93개('17.9월) → 5개('18.10월)

○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* 도입(복지부, '18.7월) 및 금융그룹감독 제도** 시범운영 실시(금융위, '18.7월) 등 재벌개혁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.

*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

**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·집중위험·내부거래 관리 등 금융그룹별 통합위험 관리

-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(중기부, '18.6월)했고, 아울러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*을 마련(기재부)했습니다.

* ('17년) 소득세·법인세 최고세율 조정, 고용증대세제 신설,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('17.12.19. 공포)
('18년) 근로장려금 확대, 종합부동산세 개편, 주택임대소득과세 개편 등('18.8.31. 국회제출)

- 정부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과제*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.

*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(공정거래법, 11월 국회제출 예정),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 보호(상법, 상임위 계류중), 협력이익공유제 도입(상생협력법, 상임위 계류중),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(유통산업발전법, 상임위 계류중) 등

- 또한,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,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
◆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(국토부)

- 정부는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·허가·시공·사고대응 등 사업 단계별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
① (계획·허가단계) 공사 전 허가권자(지자체)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·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

- 이를 지자체에서 충실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 전담조직·인력 등을 보강(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)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② (시공단계)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하고,

- 굴착공사 감리와는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(지하안전영향조사)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.

③ (사고대응단계) 일정 요건*을 갖춘 건설안전 민원은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,

*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축법」 상 건설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관련 증거(균열 사진, 전문가 의견 등) 등이 첨부된 민원

-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·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·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(신설)하고,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토록(현재: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) 관련 법령(건설기술진흥법, 건설산업기본법)을 개정기로 했습니다.

□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민원 대응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즉시 시행하는 한편,

-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정작업과 함께 관계 기관에 행정지시 등을 병행하여 대책의 취지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의식을 계속 높여나가겠습니다.

1 시장진입 장벽 완화 (20건)

1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 [9건]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-|--|------|
| 1 | <p>◆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</p> <p>기존 항공사업법 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로 "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"이라는 요건을 규정, 사업자가 시장 진출하는데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</p> <p>개선 면허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 삭제</p> | 항공사업법 ('18.5 발의) | 국토부 |
| 2 | <p>◆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추진</p> <p>기존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필요</p> <p>개선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(단,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 등은 강화)</p> | 전자상거래법('18.12) | 공정위 |
| 3 | <p>◆ 문화재수리업자 자격요건 완화</p> <p>기존 문화재 수리업자가 문화재 안전 또는 기반 설비 마련 등을 위한 전기·통신·소방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 겸업 필수</p> <p>개선 전기·통신·소방 공사는 문화재 수리업자가 해당 공사업 자격을 갖추지 않고서도 해당 공사업자와 공동 수행할 경우 문화재 수리가 가능토록 개선</p> |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('18.12) | 문화재청 |
| 4 | <p>◆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확대</p> <p>기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필수적인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 응시 가능 경력요건에 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재난관리자 경력은 불인정</p> <p>개선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 근무경력 인정</p> |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9.상반기) | 소방청 |
| 5 | <p>◆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설치 승인제 완화</p> <p>기존 경영·금융·물류전문대학원 설치에 사전심사승인 대상임에 반해, 일반 및 특수대학원 신설은 자율사항</p> <p>개선 타 전문대학원과 동일하게 경영·금융·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또한 사전심사 및 승인 → 사전협의로 완화</p> |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('19.4) | 교육부 |
| 6 | <p>◆ 사내대학 설립가능 주체 확대</p> <p>기존 종업원 200명 이상의 단독사업장에 사내대학 설립자격 부여</p> <p>개선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·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</p> |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('19.6) | 교육부 |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|---|------|
| 7 | <p>◆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요건 완화</p> <p>기존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물동량이 증가할 경우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 허용 (예 : 최근 1년 대비 물동량 5% 이상 증가)</p> <p>개선 세관장이 정하는 물동량 범위를 충족할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 특허 가능 (예 : 수출입 물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특허 가능)</p> <p>* 종합인증우수업체,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 등은 물동량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 가능</p> |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('18.10) | 관세청 |
| 8 | <p>◆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확대</p> <p>기존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안전 관련 분야(산업안전, 소방 등) 기사 및 산업기사만 가능하고 유사수준인 기능장에 관한 사항은 규정 미비하여 참여 제한</p> <p>개선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에 기능장 포함</p> |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('19.상반기) | 소방청 |
| 9 | <p>◆ 기술대학 입학자격 완화</p> <p>기존 재직기간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대학 입학자격 부여</p> <p>개선 입학에 필요한 근무경력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</p> | 고등교육법 시행령('18.12) | 교육부 |

2 공공업무 민간참여 확대 [6건]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-|--|------|
| 1 | <p>◆ 약취 기술진단업 민간 개방</p> <p>기존 공공환경시설 약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 수행</p> <p>개선 약취 기술진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개방</p> <p>* 시설장비 등 등록요건, 결격사유 및 제재수단 등 규정</p> | 약취방지법 시행령('19. 6) | 환경부 |
| 2 | <p>◆ 민간기관 대상 지식재산 가치평가기관 신규 지정 확대</p> <p>기존 지식재산(IP) 담보대출 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</p> <p>개선 평가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신규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</p> | 발명의 평가기관 추가 지정고시('18.9), 기술평가기관 지정공고 ('18.10) * 부처 기발표 | 특허청 |
| 3 | <p>◆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용역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</p> <p>기존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하여(4개 기관)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제한</p> <p>개선 전문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</p> | 상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('19.6) * 부처 기발표 | 특허청 |
| 4 | <p>◆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요건 완화</p> <p>기존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(국유지) 매각 시,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민간기업은 실질적으로 사업 투자 곤란</p> <p>개선 어항부지 우선매각 대상범위를 공공단체에서 해당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까지 확대</p> | 어촌·어항법 ('18.12) * 부처 기발표 | 해수부 |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5 | <p>◆ 고형연료제품 민간시험기관 추가 지정</p> <p>기존 고형연료 품질검사기관이 2개소 (기계연구원, 산업기술시험원)에 불과, 검사지연 우려</p> <p>개선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기관을 추가로 지정*(민간포함)</p> <p>* (재)FITI 시험연구원, (주)대덕분석기술연구소, (재)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</p> |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시험기관 지정고시 제정 (18.4) | 환경부 |
| 6 | <p>◆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규정 완화</p> <p>기존 민간사업자는 공여구역 내 기존 지상물 등에 대해 재사용 불가</p> <p>개선 공여지 내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고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</p> |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(19.6) | 행안부 |

③ 신규 업종·유형·방식 허용 [5건]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-|--|------|
| 1 | <p>◆ VR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신설</p> <p>기존 시뮬레이터류 VR 게임물에 대해 기존 아케이드 게임물의 등급분류 기준(전체 이용가, 18세 이상 이용가 등 2가지)을 적용, 콘텐츠 개발에 한계 존재</p> <p>개선 몰입도, 체감도 등에서 기존 게임 콘텐츠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, VR 게임 특성을 반영한 VR게임 콘텐츠 등급 분류 기준 신설</p> |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(19.9) | 문체부 |
| 2 | <p>◆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</p> <p>기존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회사의 한 형태로 추가되었으나,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에 유한책임회사는 미포함</p> <p>개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가능한 회사의 형태로 '유한책임회사' 추가</p> |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18.12) | 농식품부 |
| 3 | <p>◆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청년농 참여 확대</p> <p>기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생산자는 중소농업인, 귀농인으로 한정</p> <p>개선 청년농 참여 시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청년농의 직거래 참여기회 확대</p> |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고시 (18.10) * 부처 기발표 | 농식품부 |
| 4 | <p>◆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에 대한 신기술 수의계약 허용</p> <p>기존 건설신기술, 환경신기술의 경우 공사와 물품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방재신기술은 공사만 수의계약 가능</p> <p>개선 지자체의 방재신기술 활용제품 계약시 수의계약 허용</p> | 지방계약법 시행령 (18.7) * 하위법령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) 개정 추진중(~10월) | 행안부 |
| 5 | <p>◆ 어촌계원 구성방식 확대 추진</p> <p>기존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국한 → 일반 어업인은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어촌계를 이종으로 가입해야 됨에 따라 가입비 부담 가중</p> <p>개선 어촌계원 구성방식을 일반 어업인도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귀어·귀촌인 등의 어촌계원 가입 폭 확대</p> | 수산업협동조합법 (18.7, 국회제출) * 부처 기발표 | 해수부 |

2 영업활동 제약 개선 (20건)

1 영업범위 확대 [5건]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<p>◆ 의료폐기물 멸균 처리시설 설치구역 제한 완화</p> <p>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(학교경계선 등으로부터 200미터 이내)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 →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시설 설치도 금지</p> <p>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폐기물 반출 처리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 설치·처리 허용</p> 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('18.12, 국회제출) | 교육부 |
| 2 | <p>◆ LPG판매업 공급(판매대상) 범위 확대</p> <p>기존 LPG 유통체계상 소매·공급하는 LPG판매사업자의 공급 범위를 안전관리능력을 고려하여 3톤미만 소형저장 탱크까지로 제한</p> <p>개선 LPG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 향상으로 공급범위를 안전하게 관리 가능한 10톤까지 확대</p> |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('19.하) | 산업부 |
| 3 | <p>◆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확대</p> <p>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의 범위가 풍수해 분야(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)에 한정</p> <p>개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가능 범위를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중기계획, 위험도 평가 등으로 확대</p> | 소하천정비법 등 4개 법률 ('18.12) | 행안부 |
| 4 | <p>◆ 보세공장 특허가 가능한 사업범위 확대</p> <p>기존 ① 보세공장 특허대상은 제조·가공·수리·조립·검사 등의 작업인 경우로 한정 ② 기존 공장 외에 신규 증설 시 공정상 일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단일 공장으로 특허 가능</p> <p>개선 ① 보세공장의 작업범위에 분해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특허대상 확대 ② 동일 기업체가 기존 보세공장과 근접거리(15km)이내에 신규 공장 증설시 단일 공장으로 신규 특허 허가</p> |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('18.12) | 관세청 |
| 5 | <p>◆ 대학의 교지·교사 소유 규제 완화</p> <p>기존 교육용재산(교지, 교사)은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것이 원칙</p> <p>* 연구기관이 국가소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,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 인정</p> <p>개선 교지·교사 소유 원칙 예외로 학생 주거용도 추가 허용</p> | 대학설립·운영규정('19.1) | 교육부 |

2 투자 제약요인 개선 [4건]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-|--|------|
| 1 | <p>◆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 폐지</p> <p>기존 지자체에서 입찰 시 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참여 자격 제한 가능 → 우수한 실적,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입찰 참여 자체가 차단될 우려</p> <p>개선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경기하강시 일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</p> | 지방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('19.12) *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('18.7) | 행안부 |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|---|------|
| 2 | <p>◆ 공기업 경영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 반영</p> <p>기존 공공기관의 재무운영 성과 평가 시 부채비율 관리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같이 단기간에 차입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 저조</p> <p>개선 기관의 고유사업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공기업의 경우, 주요사업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노력과 실적을 확대 반영</p> | <p>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('17.12)</p> <p>* '18년도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'19년도에 평가 실시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 | 기재부 |
| 3 | <p>◆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투자총액한도 상향조정</p> <p>기존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법상 한도(기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%)에 근접하여 투자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지원 곤란</p> <p>개선 총액한도를 현행 10%에서 20%로 확대, 안정적인 신규투자 지원 가능</p> | <p>기술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('18.9)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 | 중기부 |
| 4 | <p>◆ 고용친화적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</p> <p>기존 고용위기지역 등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로 신속한 재정투자 추진 애로</p> <p>개선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 간이 타당성 조사로 대체(4개월 기간 단축)</p> | <p>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('18.12)</p> | 행안부 |

③ 환경변화 반영 [11건]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|---|------|
| 1 | <p>◆ 개인형이동수단 도시공원 통행 허용</p> <p>기존 현행법상 이륜 이상의 개인형이동수단은 도시공원 내 통행 제한</p> <p>개선 도시공원 내 통행이 가능한 개인형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</p> | <p>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18.11)</p> | 국토부 |
| 2 | <p>◆ 삼륜차 전조등 설치거리 제한 완화</p> <p>기존 삼륜차 전조등 2개 설치시, 전조등 간 거리를 200mm 이하로 제한(이륜차 규정 적용)</p> <p>개선 삼륜차는 전조등 설치거리에 대한 이륜차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</p> | <p>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('18.7)</p> | 국토부 |
| 3 | <p>◆ 매입대금 분납중인 국유지 공장 증·개축 허용</p> <p>기존 국유지를 분납 조건으로 매매계약한 기업은 분납완료 전에는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공장 증·개축 불허</p> <p>개선 매입대금 분납 중인 국유지는 산업집적법에 따른 임대 받은 토지로 간주*하여 공장 증·개축 허용</p> <p>* 산업집적법에 따르면,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국유지 상에 공장설치 허용</p> | <p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('18.6)</p> <p>* 부처 기발표</p> | 산업부 |
| 4 | <p>◆ VR 사업장용 허가기준 마련</p> <p>기존 다양한 VR 사업장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등록 및 안전기준이 없어 VR 산업발전 및 사업활성화 저해</p> <p>개선 관광진흥법상의 기타유원시설업의 유기사설·기구 안전 관리 사항을 준용, VR 게임물 안전기준 등을 마련</p> | <p>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('19.9)</p> | 문체부 |

| 연번 | 과제명 / 개선내용 | 개정법령 / 개정시기 | 소관부처 |
|----|---|---|------|
| 5 | <p>◆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요건 완화</p> <p>기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을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승객 관광상륙을 허가</p> <p>개선 2개국을 운항하는 선박에 승선한 크루즈 승객도 관광상륙을 허가</p> |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('18.6) | 법무부 |
| 6 | <p>◆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·분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</p> <p>기존 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·분석 시 저작물의 복제 등이 요구되나, 동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가 불명확</p> <p>개선 빅데이터 수집·분석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</p> | 저작권법 ('17.12., 발의) | 문체부 |
| 7 | <p>◆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허용</p> <p>기존 정부양곡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해외 수출할 경우, FTA 원산지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 가중</p> <p>개선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, 이를 FTA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</p> | 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고시 ('18.5) * 부처 기발표 | 농식품부 |
| 8 | <p>◆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</p> <p>기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 전용 시 기준 부재</p> <p>개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적용</p> | 농지법 ('18.12) | 농식품부 |
| 9 | <p>◆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</p> <p>기존 임대차 계약 시 재배 기간에 상관없이 최단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규정</p> <p>개선 임대차 계약 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최단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촉진</p> | 농지법 ('18.12) | 농식품부 |
| 10 | <p>◆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확대</p> <p>기존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·품질 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주류 폐기 시 폐기방법을 단순 소각이나 매립방식으로 한정하여 폐기비용 부담 가중</p> <p>개선 세관장이 포장용기를 소각 또는 매물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보다 재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활용을 통한 폐기 처리도 가능토록 개선</p> |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('18.10) | 관세청 |
| 11 | <p>◆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</p> <p>기존 성실무역업체에 대하여 세관관여를 최소화하는 전자통관심사를 운영 중에 있으나, 관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전자통관 심사가 영구히 불가</p> <p>개선 관세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여 집행종료 후 2년 경과 시 전자통관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</p> |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('18.12) | 관세청 |